

성공적인 자연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향

농업 소득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축산산업이 최근 국내외의 환경문제 심각성으로 인하여 분뇨처리가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축산 전반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한·미FTA와 해양배출 금지 및 단가 인상 등 산재한 문제점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정책도 이를 인식하여 여러 대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양돈분뇨 처리에 대한 묘안을 더욱 갈망하는 실정이다. 2004년도 농림부와 환경부가 함께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을 마련한 이후로 정책이 자원화 방향으로 정립되었고, 이후 농림부 축산국에 축산자원순환과가 탄생하였으며 가축분뇨 자원화는 큰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각종 법규와 해당 지자체마다의 실정이 달라 자원화가 원활하지 못한 면이 있기에, 개선이 필요되는 사항을 축산환경대책위원회(대한양돈협회)에서 논의하였으며, 향후 조속히 개선되어 더욱 활기찬 양돈분뇨 자원화를 기대하며 논의 되었던 사항중 액비와 관련한 사항을 정리하여 본다.

1. 액비품질기준

액비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농림부령 제1573호)에서 질소함량이 0.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진청고시(제2005-26)에서의 액비는 질소함량이 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농장여건은 SCB액비, 정화중간액비질소함량 0.1%이하 무취 액비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질소함량이 높을수록 악취가 많고 부숙이 미흡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더욱이 규정대로라면 현재의 질소함량 0.1% 이하 액비는 액비가 아닌 상태이므로 자칫 가축분뇨로 취급될 소지가 있어 문



김동수 기술역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제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액비의 유익미생물과 미지인자를 중요시 한 방법으로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가축분뇨 액비에 대하여만은 질소량 등에 대한 제한을 않고 유해물질기준만을 적용한 액비공정규격을 두여야 할 것이다.

2. 시비처방서

액비 살포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법규는 없다. 그러나 무분별한 액비시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시비처방은 필요하며,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도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한 경우를 액비살포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정은 시비처방에 필요한 액비 및 토양 시료를 비전문가인 경종농가나 축산농가가 채취를 하고 있어 오차 발생 우려가 있다.

또 시비처방서는 토양의 유기물함량을 기준으로 질소요구량을 산정하여 액비로부터 질소를 공급받는 개념을 적용하여 발급하는바, 토양중의 유기물함량은 95%이상이 수분인 액비를 살포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다고 하여도 해마198다 조사해야 할 만큼 급변하지 않아 매번 토양분석은 필요치 않다.

액비시비처방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과중한 업무와 장비부족으로 시비처방서 발급 지연되어 살포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게다가 시비처방은 안전을 고려하여 기비량 중심(요구량의 약 50%)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필요한 액비량과는 큰 차이가 생겨 액비 신뢰성이 결여된다.

따라서 현재의 시비처방은 액비만 분석하여 작물별 표준비료요구량에 맞춰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개념전환이 필요되고 정히 토양분석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5년에 1회 정도로 축소분석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해마다 신설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액비는 균일한 품질과 막대한 경지를 필요로 하므로 현실적으로 토양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시비처방서 면제 또는 경종농가의 요구시에만 발급하여 살포토록 하는 예외조치가 필요된다.

또한 시비처방서 발급처를 농업기술센타로 제한하지 말고 분석장비가 갖추어진 농·축협으로도 확대하여 불편을 줄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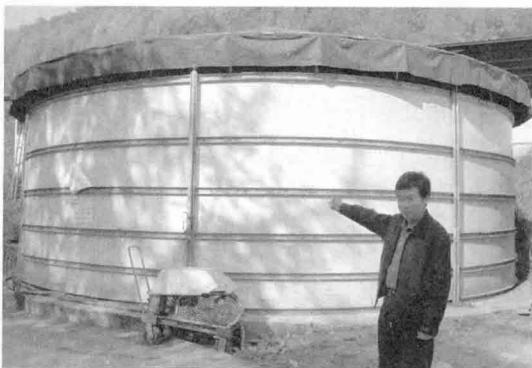


▲ 현재의 시비처방은 액비만 분석하여 작물별 표준비료요구량에 맞춰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개념전환이 필요하다. 토양분석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5년에 1회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살포지 확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법 12조 2항에 의하여 환경부령에 따라 액비는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지자체에서는 지목이 논, 밭,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한해서만 농지로 인정하여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밤나무밭 등) 및 유락지인 골프장에는 액비 요구가 있어도 불법적인 살포가 되고 있다.

특집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방안과 향후 방향



▲ 액비저장조 설치에 한하여는 규모제한을 폐지하는 예외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 확보는 지목과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땅을 확보하면 되도록 농경지라는 조문을 변경해야 할 것이며, 액비는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농사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농림부령에 의하여 확보토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는 액비도 품질기준이 있고 살포시 시비처방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살포지 확보 조항은 삭제하여 운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4. 농지확보 증명 행정절차

액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액비사용동의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농지확보 증빙자료로 토지소유자의 인장을 찍은 액비사용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는 임차농 9.2%, 자작+임차농 53.3%, 자작농 37.1%로 토지소유자는 거의 대도시에 거주, 현실적으로 액비사용동의서를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합리적으로 실제 경작자에 대한 액비사용 동의서로 대체하여야 합당할 것이다. 또, 실제 경작자인지 확인은

지역 농협 또는 마을 이장의 영농확인으로 인정해 주면 효율적일 것이다.

5. 액비저장조 설치

액비를 연중 지속적 이용하거나 이용준비하기 위해서는 농지 등 사용지 가까이에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정책도 매년 200 m³ 규모 액비저장조를 늘여서 8,000여기까지 늘여갈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역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농사용으로 150m³ 이상의 공작물(액비저장조)을 설치할 경우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어, 농지법 개정에 의한 축사의 경우는 부속시설로 액비저장조를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어 모순된다.

그러므로 국토의 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액비저장조 설치에 한하여는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예외조항 신설이 필요된다.

6. 액비화 가축분뇨 6개월 저장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하여 액비화시설에서는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는 유럽의 액상분뇨에서 적용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도 축사하부 피트에서 저장되는 기간도 모두 합산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의 액비는 저장에 의한 혐기성 저장액비는 악취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액비제조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액비화공정은 거의 없고, 악취 없는 호기성 액비만이 사용되어지는 양상이다. 게다가 액비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법률에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하도록 한 조항은 폐지하거나 현실에 맞게 이용시까지 저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처 확대 개발로(과수원, 비닐하우스, 기비, 추비 등) 단기간에 생산된 호기성액비는 연중 공급 가능하게 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하도록 한 조항은 폐지하거나 현실에 맞게 이용시까지 저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7. 액비저장조 전기료

액비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전국 농지에 설치된 액비저장조는 그 내용물이 썩지 않고 균질하게 하기 위하여 교반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교반장치는 부로워, 콤프레샤 등 모타장치로서 전기가 필요되고 현재 농사용(병) 전기료를 적용받고 있다. 저장조내의 액비는 농사에 적용되는 벼농사 필요되는 물과 같이 직접이용 되는 재료이기에 농가용(갑) 전기료가 적용되어야 농가가 액비저장조를 잘 관리 이용할 것이다.

8. 공동자원화시설

2007년 5개소, 2008년 15개소 등, 향후 75개소



▲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 확보는 지목과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땅을 확보하면 되도록 농경지라는 조문을 변경해야 할 것이며, 액비는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농사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농림부령에 의하여 확보토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까지 늘어날 계획으로 신설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이 액비화시설일 경우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시킬 수 있는 저장조 확보 규정 준수는 불가능하다. 또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로서 일정규모의 액비살포농지 확보가 현실적 불가능하다. 이미 주변 농경지는 인근 축산농가의 액비살포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매일 제조되는 다량의 액비 성상은 거의 동일한데 매번 시비처방에 의한 살포를 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이같이 지금까지 앞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총괄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의 가축분뇨 저장조 확보 조항도 최소한의 액비저장조 확보로 바뀌어야 하며, 비료공정 규격 유해물질기준에 부합하면 액비로 인정하고, 별도 액비성분 등록절차 마련하여 품질기준에 부합되면 시비처방서 및 살포농지확보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원만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수면에 들어난 가축분뇨액비 활성화 저해 요소들이 2008년 새봄부터 정리되어 한층 더 믿을 수 있는 농가의 사랑받는 친환경농업의 재료로 농지에 자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양돈**